

# 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

기후환경본부

총 6건 건의

목 록

연 번	건의제목	건의부서
1	운행제한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재 수단 강화	대기정책과
2	차량등록시 개인정보 전자우편(이메일)주소 표기	대기정책과
3	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한 엄격한 억제기준 강화	대기정책과
4	조기폐차 지원 대상 확대	대기정책과
5	휴게음식점 등의 커피박을 분리수거 품목으로 지정	자원순환과
6	공공소각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 적용 제외	자원회수시설과

# 법령 · 제도개선 건의사항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  (법무부)
<p>1. 운행제한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재 수단 강화 (대기정책과, '24. 3. 7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(약칭)미세먼지법 및 (약칭)대기관리권역법에 의거 상시 및 *특별운행 제한 실시중임.</li> <li>* 특별운행제한 :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(매년 12월~3월, 비상저감조치 발령시) 시행</li> <li>○ '21.1월 이후 운행제한 과태료 체납율은 전수기준 57%, 금액기준 65%임.</li> <li>- 과태료 부과(감면 제외) 50,386건/6,456백만원, 체납 28,847건/4,185백만원('24.3.31. 기준)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운행제한 과태료 체납률이 다소 높은 근본 원인이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미비.</li> <li>- 재산압류를 시행하고 있으나, 압류로는 제재력 부족 실정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미세먼지법 및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운행제한 과태료도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'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' 제14조 개정 건의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' 제14조</li> </ul>	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2. 차량등록시 개인정보 전자우편(이메일)주소 표기 (대기정책과, '24. 2.19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편(등기 및 일반)고지 시스템을 개선하여 고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, 전자고지시스템을 개발중이나,</li> <li>○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에 전자우편(이메일)주소가 없어 전자고지 시스템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.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편(등기 및 일반)발송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,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률이 높아 고지의 실효성이 떨어짐</li> </ul> <p>※ 발송단가 : 등기우편 2,100원, 일반우편 410원, 전자고지(문자 200원, 카톡 15원, e-mail 0원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차량등록신청서에 전자우편(이메일)주소 기재 독려 및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록 정보에 전자우편(이메일)주소 추가, 전자 고지 제공 동의를 위해 '자동차등록규칙' 별지 제9호 서식 개정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</li> </ul>	<p>(국토교통부)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3.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한 엄격한 억제기준 강화 (대기정책과, '24. 2. 21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대형 공사장*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일반공사장에 비해 강화된 비산억제 방안이 필요한 실정</li> <li>* 건축물축조공사 연면적 1만㎡이상, 토목공사 총연장 2km 이상, 조경공사 5만㎡이상 등</li> <li>○ 서울시는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친환경공사장을 자발적으로 운영 중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市-건설사 간 협약체결에 따른 자발적 참여로 미이행시 불이익 없음.</li> <li>- 미이행 공사장에 대하여 '협약 종료'외 별다른 제재가 어려움</li> <li>○ 건설사 자율 참여로 <b>파격적인 유인책 없이 급격히 확대하기 어려움</b>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특별관리 공사장(연면적 1만㎡이상)을 현행 친환경공사장의 억제기준을 적용토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별표 개정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 및 별표 15</li> </ul>	<p>(환경부)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4. 조기폐차 지원 대상 확대 (대기정책과, '24. 3. 19.)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저감장치(DPF 등) 부착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보조금 중복으로 <b>조기폐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</b></li> <li>○ 조기폐차 후 '차량구매 추가지원금'은 최대 150 ~ 400만 원(3.5톤 미만 승용 기준) 지원하고 있으나 <b>차량 미구매자에 대한 지원 부재</b></li> <li>○ <b>경유 외 유종에</b> 대해서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</li> <li>○ 5등급차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로 전환 미비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저감장치(DPF 등) 부착 차량의 폐차 전환 곤란</li> <li>○ 조기폐차 후 미구매자 및 경유 외 유종에 대한 조기폐차 유인 정책의 실효성 저하</li> <li>○ 지원 보조금이 낮아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음(전환율 6%)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배출가스 저감장치(DPF) 부착 후 의무운행 기간(2년) 경과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</li> <li>○ 3.5톤 미만 개인소유 승용차 폐차 후 차량 미구매자에게 추가지원금 지급</li> <li>○ 모든 연료의 4·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</li> <li>○ 무공해차 구매보조금(50→100만원) 및 5등급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상향(300→350만원)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 고시) 개정</li> </ul>	(환경부)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5. 휴게음식점 등의 커피박을 분리수거 품목으로 지정 (자원순환과, '24. 3. 7.)	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커피 소비량과 함께 커피박 발생량                증가 추세</li> </ul> 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커피박은 분리배출 시 재활용이                가능함에도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               자치구·카페의 분리배출 참여 저조,                기존 자율적 업무협약 체결 한계</li> </ul> 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커피박을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               품목에 포함</li> </ul> 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               지침' 제3조 [별표1] 3. 기타                재활용가능자원</li> </ul>	(환경부)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6.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(자원회수시설과, '24. 3. 7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 소각시설 노후화로 시설개선 필요</li> <li>○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금지</li> <li>○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및 '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노후화된 소각시설의 현대화(신규, 증설)가 불가피하나, 기존시설(양천,노원,강남)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어 현대화 추진에 장애요인</li> <li>○ '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소각시설 확보 필요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설치된 소각시설을 현대화할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 대상에서 제외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7호</li> <li>○ 「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 제1항</li> </ul>	<p>(환경부, 교육부)</p>